

물리치료 의무기록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회원 6개지부를 중심으로)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김 인 숙

ABSTRACT

Research on Record Keeping by Physical Therapists in 6 Branches of the Korean Physical Therapists' Association (KPTA) in Seoul

Kim, In Sook B.Sc., R.N., R.P.T., M.P.H.
*Yonsei Medical Center, Severance Hospital,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Physical Therapy Section*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during the period March 24, 1989 to April 28, 1989 among therapists in 6 KPTA branches in Seoul (West Gate, Chong Ro, Sung Dong, Kang Dong, Kang Nam and Yong Deung Po). The subjects were 190 therapists attending the 1989 Continuing Education sessions who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subjects under investigation were the writing of physical therapy treatment records,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place of employment, and reasons for not keeping treatment records. The results were analysed statistically. The most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s :

1. Out of 190 persons, 43(22.6%) kept treatment records and the largest group in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was the 3 years and under group comprising 84 persons(44.2%).
2. Distribution of site of work place showed 70 persons(36.8%) working in private clinics as the largest group, followed by 53 persons(27.9%) in general hospitals, 48(25.3%) in university hospitals and 19(10.0%) in rehabilitation centers.
3. The most frequent reason cited for not recording patient treatment was lack of knowledge of recording methods as well as thinking records are not important-by 93(63.2%) out of 143 respondents.

From the above, it can be seen that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treatment records in physical therapy and the methods of writing these records is urgently needed.

ABSTRACT

- I. 서 론
- II. 연구목적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조사방법
 - 3. 분석방법
- IV. 연구결과
 - 1. 물리치료사 근무처 분포
 - 2. 물리치료사 임상경력 기간 분포
 - 3. 물리치료사 임상경력 기간과 근무처 분포
 - 4. 물리치료사 1인의 1일 환자 치료수와 근무처와의 비교
 - 5. 물리치료 의무기록 작성 여부
 - 6.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연구해 본 경험과 임상경력 기간과의 비교
 - 7.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연구해 본 경험과 근무처와의 비교
 - 8.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
- V. 고 찰
- VI. 결 론
 - 참고문헌

I. 서 론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치료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모든 치료사실과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2,4)}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을 막론하고 모든 치료사들은 정확하고 완전한 의무기록을 작성하여 물리치료의 질적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물리치료 의무기록에 대한 통일된 작성법에 대하여 논의한 바도 없으며 학교교육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기록의 역사는 의학의 역사와 일치한다.⁸⁾ 중세기에 개원한 영국의 St. Bartholomew's Hospital은 개원당시의 환자기록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으며 18세기의 Pennsylvania Hospital, 19세기의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등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

다.⁸⁾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많은 병원들과 병원협회 및 의학협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1902년 미국 병원협회에서 의무기록의 통일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1970년 North Carolina 물리치료협회는 의무기록 작성에 대한 많은 연구발표를 통하여 1975년 Problem Oriented Record System을 실시하였고, 1977년에는 미국 물리치료협회에서 S.O.A.P.Note를 실시하게 되었다.^{6,7)}

우리나라 의사들은 서양의학이 들어온 이래 통일성이나 체계가 없이 의무기록이 작성되어 오다가 1957년부터 의무기록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1965년부터 전국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작성과 활용의 체계가 논의 되었다.⁴⁾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21조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적어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⁴⁾ 그러나 오늘날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물리치료 의무기록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준비가 없다. 협회차원에서 물리치료 발전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유능한 치료사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완전하고 체계적인 의무기록을 작성하여 모든 치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회원 6개지부를 중심으로 1989년도 보수교육 참가자 중에서 설문지 응답자 190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실태를 조사하고 미비 의무기록의 발생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의무기록 작성법에 대한 대책마련에 계획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목적

첫째. 물리치료 의무기록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미비 의무기록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작성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미비 의무기록을 감소시키고 물리치료의 질적향상과 치료사의 위치를 격상시킨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989년 3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회원 6개지부(서대문, 종로, 성동, 강동, 강남, 영등포)를 중심으로 보수교육 참가자 중 설문지 응답자 190명이 연구대상이다.

2. 조사방법

보수교육 시작 전에 미리 작성된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배포 하였고 보수교육 끝날 때 회수 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된 각 항목별 내용을 부호화하여 전산처리 하였고 이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 등으로 상호 비교하고 χ^2 -Test를 통하여 간변수의 비율간의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물리치료사 근무처 분포

총 190명 중 개인병원 70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종합병원 53명(27.9%), 대학병원 48

표 1. 물리치료사 근무처 분포

근 무 처	물리치료사 수	백분율(%)
대학병원	48	25.3
일반종합병원	53	27.9
재 활 원	19	10.0
개인병원	70	36.8
계	190	100.0

표 3. 물리치료사 임상경력 기간과 근무처 분포

근무처 근무경력기간	대학병원	일반종합병원	재 활 원	개인병원	계(%)
3년 미만	16(8.4)	17(9.0)	9(4.7)	42(22.1)	84(44.2)
5년 미만	9(4.7)	5(2.6)	5(2.7)	14(7.4)	33(17.4)
10년 미만	17(9.0)	18(9.5)	4(2.1)	13(6.8)	52(27.4)
10년 이상	6(3.2)	13(6.8)	1(0.5)	1(0.5)	21(11.0)
계	48(25.3)	53(27.9)	19(10.0)	70(36.8)	190(100.0)

P < 0.05

명(25.3%), 재활원 19명(10.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2. 물리치료사 임상경력 기간분포

임상경력 기간의 분포를 보면 3년 미만이 84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0년 미만 52명(27.4%), 5년 미만 33명(17.4%), 10년 이상 21명(11.0%)의 순위였다(표 2).

표 2. 물리치료사 임상경력 기간분포

임상경력기간	물리치료사 수	백분율(%)
3년 미만	84	44.2
5년 미만	33	17.4
10년 미만	52	27.4
10년 이상	21	11.0
계	190	100.0

3. 물리치료사 임상경력 기간과 근무처 분포

총 19명 중 10년 이상 근무자는 일반종합병원 13명(6.8%), 대학병원 6명(3.2%), 재활원 1명(0.5%), 개인병원 1명(0.5%)의 순위였으며 개인병원 근무자는 3년 미만이 42명(22.1%), 일반종합병원 17명(9.0%), 대학병원 16명(8.4%), 재활원 9명(4.7%)으로 각 비율은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4. 물리치료사 1인의 일일 환자 치료수와 근무처와의 비교

총 190명 중에서 일일 환자 치료수는 개인병원 근무자가 30명 이상이 30명(1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종합병원 22명(11.6%), 대학병원 7명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명 미만은 대학병원에서 29명(15.3%), 개인병원 23명(12.1%)의 순이며 이 비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표 4. 물리치료사 일일 환자수와 근무처와의 비교

근무처 일일환자 치료수	대학병원	일반종합병원	재활원	개인병원	계(%)
20명 미만	12(6.3)	9(4.7)	18(9.5)	17(8.9)	56(29.4)
30명 미만	29(15.3)	22(11.6)	1(0.5)	23(12.1)	75(39.5)
30명 이상	7(3.7)	22(11.6)	—	30(15.8)	59(31.1)
계	48(25.3)	53(27.9)	19(10.0)	70(36.8)	190(100.0)

P < 0.05

5. 물리치료사 의무기록 작성여부

총 190명 중 의무기록 작성자는 43명(22.6%)이고 147명(77.4%)이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물리치료사 의무기록 작성여부

작성여부	빈도	백분율(%)
작성한자	43	22.6
작성안한자	147	77.4
계	190	100.0

6.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이용한 연구경험과 치료경력과의 비교

총 190명 중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연구경험한 치료사는 58명(30.5%)이었고 근무경력 10년 미만에서 22명(11.6%), 3년 미만에서 19명(10.0%), 5년 미만에서 11명(5.8%), 10년 이상에서 6명(3.1%)의 순이었으며 연구경험이 없는 치료사는 3년 미만에서 65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이 비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표 6.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이용한 연구경험과 치료경력과의 비교

임상경력 연구경험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있 다	19(10.0)	11(5.8)	22(11.6)	6(3.1)	58(30.5)
없 다	65(34.2)	22(11.6)	30(15.8)	15(7.9)	132(69.5)
계	84(44.2)	33(17.4)	52(27.4)	21(11.0)	190(100.0)

P < 0.05

7.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연구 해본 경험과 근무처와의 비교

총 190명 중에서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연구경험한 치료사는 일반 종합병원에서 18명(9.

5%)이고, 대학병원 16명(8.4%), 재활원 12명(6.3%), 개인병원 12명(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경험이 없다는 개인병원에서 58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7).

표 7.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연구해 본 경험과 근무처와의 비교

연구경험	근무처	대학병원	일반종합병원	재활원	개인병원	계(%)
있 다		16(8.4)	18(9.5)	12(6.3)	12(6.3)	58(30.5)
없 다		32(16.9)	35(18.4)	7(3.7)	58(30.5)	132(69.5)

P < 0.05

8.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의 분포

총 190명 중 의무기록 작성법을 모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치료사가 93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치료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서가 37명(25.2%), 의무기록을 작성하기가 싫어서 미루게 되므로가 17명(11.6%)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의 분포

이유	빈도	백분율(%)
환자치료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서	37	25.2
의무기록 작성법을 모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93	63.2
하기 싫어서 미루게 되므로	17	11.6
계	147	100.0

V. 고 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였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서울특별시회 6개지부(서대문, 종로, 성동, 강동, 강남, 영등포) 회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총 190명 중 개인병원 근무자가 70명

(36.8%)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경력 분포를 보면 3년 미만인 84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 물리치료 환자수를 보면 30명 이상 치료하는 치료사가 30명(15.5%)으로 개인병원에서 많았으며 일반종합병원 22명(11.6%)이고 재활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 의무기록 작성여부는 작성안한다가 총 190명 중 147명(7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성한다는 43명(22.6%)이었다.

물리치료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연구해본 경험이 있는 치료사는 총 190명 중 58명(30.5%)으로 근무경력 10년 미만에서 22명(11.6%), 3년 미만에서 19명(10.0%), 5년 미만에서 11명(5.8%), 10년 이상에서 6명(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경험이 없는 치료사는 3년 미만에서 65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연구해 본 경험과 근무처와의 비교를 보면 총 190명 중에서 연구경험이 없는 132명(69.5%) 중 개인 병원 근무자가 58명(30.5%)으로 가장 많았다.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작성법을 모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치료사가 응답자 147명 중 93명(63.2%)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치료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서가 37명(25.1%), 하기 싫어서가 17명(11.6%)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물리치료 의무기록의 중요성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 교육을 통하여 준비되어야 하며 또한 협회 차원에서 의무기록의 기본내용과 양

식을 설정하여 통일된 내용을 모든 치료사가 따르도록 규제사항을 제정하여서 시행하는 것이 미비기록을 감소시키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며 또한 의무기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주어 물리치료사의 과다한 업무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본다.

VI. 결 론

1989년 3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회원 6개지부(서대문, 종로, 성동, 강동, 강남, 영등포)를 중심으로 보수교육 참가자 중 설문지 응답자 19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특성을 알아보고 물리치료 의무기록 작성여부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190명 중 개인병원 근무자가 70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종합병원 근무자 53명(27.9%), 대학병원 근무자 48명(25.3%), 재활원 근무자 19명(10.0%)이었다.
2. 임상경력 분포를 보면 3년 미만이 총 190명 중 84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3. 물리치료 의무기록 작성여부를 보면 작성하지 않는다가 총 190명 중 147명(77.4%)으로 의무기록의 중요성과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4.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작성법을 모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치료사가 응답자 143명 중 93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참고문헌

1. 대한병원협회 : 표준화 심사요강, 1984.
2. 대한의학협회 : 의료관계 법령집, 1983.
3. 보건사회부 : 의리기사법, 1973~1988.
4. 홍준현 : 의무기록 완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79.
5. Anderson LR : Standardization of the physical therapy record. *Phys Ther.* 56 : 911~913, 1976.
6. A.P.T.A. : The problem oriented approach to physical therapy care, 1977.
7. Feitelberg SB : The problem oriented record system in physical therapy.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University of Vermont, Sep. 1975.
8. Huffman EK : Medical record management, 7th ed, Physician's Record Co. Berwyn, 1981.
9. Inaba M, Jones SL : Medical documentation for third-party payers. *Phys Ther.* 57 : 791~794, 1977.
10. Shaughnessy MK, Burnett CN : Implementation of the problem oriented progress note in a skilled nursing facility. *Phys Ther* 59 : 160~166, 1979.